

[]마약류취급자 []허가증 재발급 신청서
 []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[]지정서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
			식품의약품안전처, 지방식품 의약품안전청: 5일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: 1일

신청인	성명	생년월일
	업소의 명칭	허가(지정)연월일
	업소의 소재지	

허가(지정)번호	허가(지정)종별
----------	----------

신청사유

「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제15조에 따라 위와 같이 허가증(지정서)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이
의
의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담당자 성명

담당자 전화번호

식품의약품안전처장,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
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

귀하

첨부서류	허가증 또는 지정서(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못쓰게 된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		
		구분	전자민원의 경우	방문·우편 등의 경우
		허가증	25,000원	28,000원
		지정서	10,000원	12,000원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 → 접수 → 검토 → 결재 → 허가증(지정서) 작성 → 통보 및 발급

신청인

처리기관 : 식품의약품안전처,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, 특별자치시·시·군·구

210mm×297mm [백상지 80g/m²]